

제4호

국가발전을 위한
국·내·입·법·의·견·조·사

성직자 과세 논쟁

1992. 11.

한국법제연구원

『국내입법의견조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법의견과 향후 예측가능한 입법수요를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생활과 국가의 입법정책 및 입법과정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정기간행물입니다.

일반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입법의견을 빠짐없이 수집·검토하는 것은 본 조사연구의 목적과도 직결됩니다. 보다 완전한 입법의견조사연구를 위해서는 일반국민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이 필요합니다.

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과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 연구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11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번호 (02) 722-0163~5

연구책임자

책임연구원 박상철

연구원 김창규

연구원 윤성승

목 차

제 1 편 성직자 과세논쟁

I. 문제의 소재	1
II. 성직자 과세논쟁.....	3
III. 종교재산관련 입법의견 및 법조항(참고자료)	10
1. 종교재산관련 입법의견	10
2. 종교재산관련 법조항	12
IV. 입법방향	18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I. 최근입법의견 동향	19
1. 최근입법의견 목록	20
2. 최근입법의견 요지	23
II. 최신법령 목록	46

제 1 편

성직자 과세논쟁

I. 문제의 소재

성직자에 대한 과세문제는 종교계에 있어서 비과세가 당연한 것으로 인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공개토론마저 금기시되어 왔으나 1991년 3월 일부 성직자들에 의한 자진납세의 움직임이 언론에 보도되면서¹⁾ 사회적 관심을 모으게 되었고, 한명수 목사와 손봉호 교수간의 「월간 목회」(1992. 1~1992. 7)를 통한 찬반논쟁이 전개되면서 공개적 논의의 차원으로 발전하여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주최로 공개토론회가 개최(1992. 9. 4)되기에 이르렀다. 국세청은 성직자의 과세문제에 대하여 강제징수할 의사 는 없으며 성직자의 자율에 맡긴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힌(1992. 9. 18) 바 있다.

그러나 성직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²⁾는 단순히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납세의무와 연관된 법적인 문제이므로 법적인 근거 없이 이의 감면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과세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성직자의 과세문제는 법적인 측면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논의를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또한 토지초과이득세법 등의 운영에 있어서 종교재산 과세에 대해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과 법적인 타당성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우리헌법 제 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

1) 중앙 91. 3. 11., 3면.

2) 본 보고서에서 성직자의 대상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 유교, 민족종교 등의 성직자를 총망라하나 여기서는 공개적인 기초자료가 개신교와 천주교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여타 종교의 성직자 과세관련 입법의견은 제외되고 있다.

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하나로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금은 개인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동일한 담세능력에 대해서는 평등하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특정인이나 특수계층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면세 또는 감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성직자 및 종교재산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인 납세의무와 정당한 이유에 의한 세금감면이 서로 대립하는 분야로서 세금감면근거의 타당성 및 적법성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다. 특히 성직자의 과세논쟁은 성직자의 근로의 특수성 및 이중과세의 여부에 있어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보고서는 최근 종교계 내·외에서 논의된 성직자의 과세문제 및 종교재산 관련의견에 대하여 그 근거를 정리해 보는 것이 보다 심도있는 연구·법리적 접근과 향후 입법 및 법해석에 있어서 일조가 되리라 기대하면서 이와 관련된 입법의견을 소개한다.

II. 성직자 과세논쟁

찬성의견	반대의견
<p>○ 손봉호(서울대 교수)</p> <p>① 성직의 특수성여부 성직수행이라 하여 근로가 아닌 것 이 아니며 모든 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아름답고 정당한 것이므로 성직 을 근로라 한다 하여도 성직이 모독 당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비록 성 직이 일반직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 구별을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 에다 강요할 수는 없으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성직자도 국민이요 다른 국민과 차별대우를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그의 소득은 모든 다른 사람 의 소득과 아무 다름이 없다. 일하 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아 무 효력이 없고, 그것은 주관적인 목적에 불과하여 면세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또한 성직자이기 때문에 받는 불이익은 다른 방법으로 보완 되어야 하며 성직자에게 혜택이 없 는 것은 세금면제와 연결되어야 한 다고 보지 않는다. (월간 목회 1992. 2., 66~67면; 월간 목회 1992. 6., 69면)</p> <p>② 성직자 소득의 성격 자연인에게 일정액의 금액이 들어오 고 그것을 자기의 판단에 따라 처분 할 수 있으면 그것은 소득이고, 법에 서 예외로 규정한 것외의 모든 소득 에는 반드시 과세되는 것이 원칙이 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직자는 정 기적으로 일정한 액의 금액을 수령하 고, 그것으로 생활하며 자녀를 교육 시키고 다른 활동을 하므로 그것은</p>	<p>○ 한명수(창훈대교회 목사)</p> <p>① 성직의 특수성 우리나라 법인세법의 정신은 성직자 의 활동이 개인의 이익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다는 측면 에서 보아왔으며 이것은 성직자의 행위가 정신적 유익을 위한 자선활 동으로서 개인의 소비행위에 해당되 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자진납세하는 성 직자들의 납세란 그 수입원을 개인 소득으로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 이며, 성직자 개인의 소득을 근로소 득으로 보는 것인데 성직자의 성직 수행을 근로로 본다는 것은 일반직 과 성직을 동일시할 위험을 스스로 내포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헌신하기 를 다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며 그 말씀에 근거하여 봉사의 섬김 을 스스로 강요하는 하나님의 영광 과 관계된 성직수행을 교수, 교사, 교도관 등의 교육이나 교화 등의 정 신노동과는 함께 볼 수 없는 분명한 질적 차이 혹은 성속의 고유직능이 있음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월간 목 회 1992. 1., 69~70면; 월간 목회 1992. 5., 71면)</p> <p>② 성직자의 근로의 특수성 목회자가 근로자이고 성직수행을 근 로라고 하려면 성직수행도 근로기준 법에 명기된 주당 48시간의 근로만 으로 충분해야 하며 개인의 사생활 도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나, 성직자 의 개인시간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 찬가지고 성직수행의 시간도 밤과</p>

찬성의견	반대의견
<p>엄연히 하나의 소득이고, 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월간 목회 1992. 2., 67면)</p> <p>③성직자 납세문제의 성격</p> <p>목회자의 납세가 기독교 내적 문제로만 논의 된다면 그것은 기독교 교리적 혹은 윤리적 문제이겠지만, 세속국가에 내는 세금문제를 논의할 때는 법리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마땅하다. 목회활동이 근로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기독교적 입장에서 보아도 완전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질 수 없지만 적어도 세금이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기독교적 관점에서만 결정될 수 있고, 법적인 관점에서 결정될 수 밖에 없다. 또한 납세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여러 다른 종교인, 비신자들과 같이 세속국가 속에 살기 때문에 가질 수 밖에 없는 의무이다.(월간 목회 1992. 4., 65~66면; 월간 목회 1992. 6., 68면)</p>	<p>낮이 없는 초시간·초공간적인 형태의 수행이 요구되므로 이런 입장에서 볼때 성직자가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음으로 생기는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수한 종교적 요구를 수행하는 성직자는 성직자 그대로 인정받고 성직자 그대로 순수히 납아 있어야 한다.(월간 목회 1992. 5., 75면)</p>
<p>④이중파세 여부</p> <p>법인이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기부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당연하므로 교회의 연보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법인이 그 소득에서 다시 지출하는 목회자에 대한 사례는 법인의 수입이 아니라 지출이므로 법인자체의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된다고 하여서 법인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의 소득도 면제될 수는 없다. 교회에 내는 연보는 이미 세금을 낸 후의 소득이기 때문에 다시 그 돈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이론은 법인인 교회의 소득에는 적</p>	<p>교회의 수입원인 현금은 일반 세법적 시각으로 볼때 기부금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현금은 액수의 다소에 관계없이 성도들이 개인의 소득에서 원천과세를 세법이 정한대로 납부하고 난후 자신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돈에서 교회에 내는 것이고 이러한 현금이 교회의 재산이 되기도 하고 그 교회의 현금 중에서 교회를 위해 봉사한 교역자와 직원들에게 급료(사례비 혹은 생활비)를 지불하게 되는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파세가 된다.(월간 목회 1991. 1., 70면; 새누리신문 92. 9. 19., 11면)</p> <p>④법적근거</p>

찬성의견	반대의견
<p>용될 수 있을지 모르나 성직자의 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즉 성직자의 세금문제는 법인세법의 범위에서 규정될 수 없다.(월간 목회 1992. 2., 65~66면)</p> <p>⑤납세의 법적 근거</p> <p>소득세법 관련: 소득세법에 성직자의 급여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는 것은 세법상으로는 성직자와 일반근로자를 전혀 구별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은 특별취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 하므로 세법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므로 면세라는 해석은 잘못이다.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납세의무가 전제되어 있고, 다만 비파세되는 경우만 명기해야지,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명기할 수도 없고 명기할 필요도 없다. 또한 예술가나 작가처럼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 신고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월간 목회 1992. 4., 66면; 월간 목회 1992. 6., 68면)</p> <p>법인세법 관련: 교회나 종교방송 등은 종교의 보급 혹은 교화를 위한 비영리 법인이고, 그런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사실 면세되고 있으나 그 법인이 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마땅히 파세되어야 하며 법인세법 제18조 시행령 제42조 제6호는 그것파는 아무 관계가 없다.(월간 목회 1992. 4., 66~67면)</p> <p>⑥파세의 이론적 근거</p> <p>법적 기독교국가인 외국의 경우도 성직자에게 세금을 물리고 있는데 기독교가 국교도 아닌 세속국가인 한국에</p>	<p>예 파세있다"라는 원론적 명제와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하는 총론적 명제들은 그것이 국민 개개인에게 적용되려면 법률장치를 통해서 구체화될 때 가능한데, 법률장치의 대표적 구조인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38조)"라고 되어 있으나 그 관련세법에는 납세조항이 없으므로 성직자의 파세는 강제성이 없을 뿐아니라 현행법이 보장한 것이기도 하다.(월간 목회 1992. 7., 73면)</p> <p>⑤면세의 이론적 근거</p> <p>운동선수들이 병역면제를 받는 경우가 있는 것은 그만큼 국가에 유익을 주기 때문인 것처럼 국가와 교회의 관계는 상보관계이고 국가적으로는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금납부는 옳은 주장이 아니며, 현행법이 성직수행을 근로소득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유발시킬 필요는 없다.(한국복음주의 협의회주최 세미나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1992. 9. 14)」; 한국교회공보 92. 9. 19., 1면)</p> <p>⑥파세범위</p> <p>성직자의 납세 불가 주장이 순수한 성직자 개인명의의 재화나 그에 의해 운용되는 생산활동의 잉여금까지 포함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성직자라 할지라도 성직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 외의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파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월간 목회 1992. 5., 78면)</p> <p>⑦납세에 관한 제도적 개선방향</p> <p>교회의 기업화 현상의 일면과 여기에 발맞추어 사이비 종교집단의 탈</p>

찬성의견	반대의견
<p>서 면세특혜가 주어지는 것은 이해 할 수 없으며, 일반시민은 세금을 내고 일부 외제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목회자들은 면세대상이라는 것은 윤리적 측면에서나 형평의 차원에서 부당하며 목회자가 세금을 안내면 다른 부분에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사랑의 사역의 입장에서라도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주최 세미나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1992. 9. 14)」; 한국교회공보 92. 9. 19., 1면; 새누리신문 92. 9. 19., 11면)</p> <p>⑦ 법인의 본질과의 관계</p> <p>법인설재설과 법인의제설의 문제는 성직자의 세금문제와 아무 관계가 없으며, 그것은 법인에 출자하는 개인과 법인과의 문제이지 법인과 그 법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교인들이 교회에 연보하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교회가 다시 법인세를 낸다면 이중과세가 될 것이지만 성직자는 교회의 출자가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시행한 활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법인설재설 혹은 법인의제설이 문제될 필요는 없다. (월간 목회 1992. 4., 67면)</p> <p>⑧ 납세대상자</p> <p>대부분의 목사들은 사실 갑근세를 낼만큼 소득이 없으며 실제로 세금이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도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는 몇 안되는 교역자들이다. 최고급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갑근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법적으로 뿐만 아니라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그러나 80%이상의 목회자가 면세점이</p>	<p>법적인 행위등은 국가적으로나 종교 자체들이 경계하고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성직자들의 자진납세행위가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본의는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그 개인행위가 전국에서 시무하는 성직자들과 전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고 이 문제는 교단적이고 별교회적인 일치된 의견과 행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월간 목회 1992. 1., 72면)</p> <p>○ 이재정(성공회신학대학장)</p> <p>성직수행이 과연 근로문제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문제의 요지이며, 근로소득은 직업자가 있어야 하는데 성직의 경우는 측정이 불가능하고 성도들의 현금역시 성직수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자기희생, 감사의 뜻이기 때문에 성직자의 생활비는 각종 근로소득의 범주와는 무관하며 성직 수행과 소득은 교회 구성원의 공동의 목표를 위한 목회의 봉사행위이기 때문에 계약에 의한 근로의 댓가라고 볼수 없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주최 세미나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1992. 9. 14)」; 중앙 92. 9. 15., 23면; 한국교회공보 92. 9. 19., 1면; 새누리신문 92. 9. 19., 11면)</p> <p>○ 안종우(목사)</p> <p>목사와 영적·정신적분야의 혁신적 가치를 물질적 가치의 눈으로만 보는 시각은 부당하며, 목사가 받는 교회 현금은 이미 신자 개개인의 소득에서 세금을 다 낸 후의 현금이며 목사사례비는 그 특수성 때문에 교</p>

찬성의견	반대의견
<p>하의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교회의 세금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다. (새누리신문 92.9.19., 11면; 월간 목회 1992.6., 67면)</p>	<p>회 사정에 따라 다 받지 못하게 될 경우도 흔히 있고, 또한 교회의 특수성 때문에 목사의 세금을 목사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가 부담하게 되어 이중세금의 성격이 되므로 목사가 세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 (한국교회공보 92.5. 16., 8면)</p>
<p>○ 김중온(장신대 교수) 성직자가 세금을 내야하느냐는 질문은 목회자가 현금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접목되는 부분이며, 목회자가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세속 사회에 무관심하며 정치에 관심이 없는 등 사회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 조장되므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경제적 풍요로 인한 성직의 세속화 방지와 정치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성서에서 목회자 납세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기 때문에 성서적으로는 찬반 양론이 가능하지만 정의를 외쳐야 하는 목회자들이 제도권내에서 조세문제에 경직되게 대처함으로서 정당한 목소리를 낼때 위축될 우려가 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주최 세미나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1992.9.14)」; 중앙 92.9. 15., 23면; 새누리신문 92.9.19., 11면; 한국교회공보 92.9.19., 1면; 들소리신문 92.9.20., 1면)</p>	

찬성의견	반대의견
<p>을 생활비·선교비등으로 적절히 나눠 합리적 세제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 되어야 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정교분리, 단일민족국가에 복수종교를 가진 나라에서는 성직자도 국민 일반에게 적용되는 납세 의무를 져야 하는데 이것은 성직임무 수행에 하등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주최 세미나 「목회자가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1992. 9. 14)」; 중앙 92. 9. 15., 23면; 새누리신문 92. 9. 19., 11면; 들소리신문 92. 9. 20., 1면)</p>	
<p>○ 김수환(추기경) 신부나 수녀도 봉급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내어야 한다. (주간조선 92. 9. 6., 37면)</p>	
<p>○ 국세청 정부는 종교단체에 대한 징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종교단체에서 자율적인 논의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해낼 경우 거기에 따르겠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조 규정대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데, 교회도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나 신도들의 현금은 수익사업의 수입에 해당되지 않고 아울러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에 나와있는 자유직업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지만 교회의 목사가 만일 고용관계에 의해 봉급이나 급료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갑종근로소득 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로 갑근세를 원천 징수하여 자진납부하는 교회도 많다. (조선 92. 9. 18., 8면)</p>	
<p>○ 중앙일보 해설 개척교회등 작은 교회의 목사가 혼</p>	

찬성의견	반대의견
<p>자서 신도들의 현금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서 일부를 자신의 생활비로 쓰는 경우에는 문제가 약간 복잡해지는데, 교회에 신도들이 내는 현금은 법인세법(제1조)상의 수익사업과 무관한 비영리법인의 기부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으며 목사직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에 열거된 자유직업소득자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세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은 낼 수가 있다. 세무당국이 스스로 세금을 내려고 하는 목사를 목사가 아닌 교회의 주체로 보고 해당 목사에게 돌아오는 생활비를 고용계약에 의해 지급되는 급료로 보면 되기 때문이다. (중앙 92. 9. 18., 6면)</p>	
<p>○ 중앙일보사설</p> <p>최근 교회와 성당들 가운데 성직자와 직원들의 갑종근로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며, 교회와 성당들의 이러한 자발적인 움직임은 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 국민 개세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일일 뿐 아니라 일부 국민들이 갖고 있는 종교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성직자의 급여는 어디까지가 개인소득이고 선교활동 인지를 가리기 힘들 뿐 아니라 교회·성당·사찰마다 그 사정이 다르지만 일부 교역자들은 그 급여로써 개인적인 생활과 활동을 하고 있고 사회가 부여하고 있는 각종 세속적인 권리도 누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므로 적어도 개인적 생활과 활동을 하는데 쓰는 부분에 대해서만은 일정한 세금을 내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중앙 91. 3. 11., 3면)</p>	

III. 종교재산관련 입법의견 및 법조항(참고자료)

1. 종교재산관련 입법의견

(1)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관련의견

○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2호에 의거 제사, 종교,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을 목적으로 택지를 취득하여 종교시설을 건축할 경우 해당 토지는 택지면적에 관계없이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교회가 종교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존재인 부목사, 전도사의 사택에 대해 과세하고 있어서 일반개인의 경우는 2백평범위내에서 건축을 인정하고 공익사업의 경우는 25.7평이내로 결정짓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종교탄압이다. 따라서 종교용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비과세되어야하며 이번에 부과된 부담금납부는 전면거부하기로 한다.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성명서 1992.9.8.; 한국교회공보 92.9.19., 1면)

○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총회

사회가 도시화되는 추세에 따라 교회의 선교활동도 전문화되어 교회마다 여러명의 전문교역자가 종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불구하고 1교회 1사택의 구입만을 허용하고 있어서 다른 전임교역자들의 사택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택지소유가 허락되는 경우에도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한해 허용하고 있으므로 국민주택규모 이상의 주택을 중여에 의해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도 취득이 불허되므로 부당하다. 또한 교회 또는 종교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택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교회의 사정상 적지않은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법률상의 개별기간인 2년만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유예기간이 없이 고율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국민 92.11.23., 10면)

○ 기독교한국침례회

종교용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택지소유부담금 비과세를 내용으로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국무총리, 민자당총재, 건설부장관 앞으로 발송하기로 결의한다. (기독교한국침례회 제82차 정기총회; 기독신보 92.10.3., 15면)

○ 박석규 (목사, 한국기독교총회 정치부 부장)

정부가 교회에 부과한 종교용 사택에 대한 과세와 택지소유부담금의 납부를

거부하고 법개정을 강력히 추진하며, 공공주택단지의 복지시설에 교회용도를 추가하도록 임원회로 하여금 당국과 교섭하도록 하며, 교역자 사택구입 제한조치 완화 및 인구비례에 따른 종교부지 배정을 당국에 건의하기로 한다. (한국기독공보 92.10.3., 1면)

(2) 임대교회 관련의견(건축법시행령 관련의견)

○ 김태화(목사, 전국임대교회총연합회회장)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건축법시행령은 상가내 교회는 물론 교회의 신축요건 까지 강화해 놓고 있어 사실상 종교활동을 제약하고 있는데, 상가내 임대교회의 입주요건에 대해 허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첨가해 사실상 규제를 강화해놓고 있으며 기존의 입주교회에 대한 경과조치가 없어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다. 또한 현행법에는 종교시설의 건축과 관련한 도로폭의 제한이 없으나 개정안 제28조에서는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만 교회건축을 허용하고 있어서 사실상 교회건축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중소도시나 그 이하에서는 8미터 도로가 거의 없고 대도시에서는 8미터 이상의 도로변의 땅값이 엄청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교회건축이 어렵다. (한국교회공보 92.4. 25., 7면)

(3)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관련의견

○ 전국개발지역종교대책연합회

택지개발촉진법에 종교시설이 체육시설, 교육시설, 우편시설, 공공목욕탕 등과 함께 공공용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시설은 조성원가 내지 무상으로 공급하면서 종교부지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려는 것은 엄연한 종교탄압이므로 종교단체를 비영리단체로 보아 신도시 개발지역내의 종교용지를 비영리성 공공시설용지로 인정하여 조성원가로 공급해주어야 하며 종교용지 대금도 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시행령 및 주택개발촉진법시행세칙 관계법개정 촉구대회 결의문; 한국교회공보 91.8.1., 7면; 한국교회공보 91.9.7., 7면)

2. 종교재산관련 법조항

(1) 지방세

ⓐ 재산세

지방세법

제184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게기하는 재산을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184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종합토지세

지방세법

제234조의1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유료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의 그 토지와 당해 토지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6(비영리사업자의 범위) 법 제234조의12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법 제107호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2) 국세

④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법인소유토지 중 유휴토지등의 범위) ①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은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한다.

②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등을 받은 업무.
3.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30조(공익사업용 토지등의 범위) ①법 제9조 제4항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나 공공사업”이라 함은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¹⁾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조세감면규제법 별표의 공공법인에 해당하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부동산매매업
 2. 부동산임대업
 3. 조세감면규제법 별표 제34호 내지 별표 제36호에 해당하는 공공법인의 신용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외에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수의사업. 다만,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와 공공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한 설립목적에 따라 수혜자가 한정되고 관리비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수혜자로부터 실비에 준하는 대가만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②법 제9조 제4항에서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9조 제2항 각호 또는 정관에 의한 고유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개인소유토지 종 유휴토지등의 범위) ③토지취득후 법령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금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를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및 기간은 다음과 같다.

2.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그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 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
3.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에 한한다)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간. 다만,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등을 받거나 이를 신청한 자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가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가산한 기간.

(4) 법인세

법인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내국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 또는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과 유사한 설립목적을 가진 법인(이하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인의 정관 또는 규칙상의 사업목적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②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격이 없는 단체) ①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 없는 사단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 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4-02-00-13(교회등에 대한 세법적용) 교회나 사찰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도가 출연한 현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는 경우에는 범 제13조 령 제8조의 제2호에 의하여 범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3) 기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택지취득허가) ①개인이 매매·교환·증여 기타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여 택지를 취득하거나 법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택지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체결전에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법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기준) ①시장·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부터 택지취득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택·기숙사·함숙소 등의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건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하의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2.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축하여 타인에게 처분 또는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당해 목적으로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법인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외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법인에 대한 택지취득허가)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

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2. 제사·종교·문화예술·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의 택지면적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택의 최소면적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9조(기준면적) ①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법 제1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이라 함은 기숙사·합숙소등의 경우에는 수용종업원 1인당 14.3제곱미터를, 사택의 경우에는 1호당 건축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단독주택 또는 1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최소면적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1호 또는 공동주택 1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최소면적은 당해 사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건축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건폐율·용적률등의 기준에 의하여 요구되는 최소한도의 면적으로 한다.

IV. 입법방향

우리나라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헌법 제20조 제1항)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교가 상호 공존하고 있는 다원종교사회이므로 종교의 건전한 발전은 단순한 종교계의 내부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직자의 과세문제 및 종교재산관련 문제는 국가사회에서의 사회현상 내지 법현상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성직자에 대한 과세는 최근의 여론조사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회내의 재정운영에 대한 비판의견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이고, 오늘날 종교단체의 재산 및 운용의 건전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¹⁾ 성직자과세문제는 궁극적으로 교회재산의 공개적 운영이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교회재산의 공개는 교회재정운영의 과행성을 막고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를 볍제적 측면에서 해결하려고 할 경우, 특정종교에 특혜를 주거나 불이익을 초래하는 과세정책 및 입법이 제정될 수도 있으며, 또한 성직자 개인의 사생활 모두가 초시간·초공간적인 형태로 성직수행에 투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성직자 소득 및 종교재산과 관련한 과세문제는 일률적으로 입법적 접근의 범위와 방향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이 문제는 보다 공개적으로 여론 및 종교계내의 의견을 수렴하는 동시에 이를 바탕으로 법적인 측면에서 우리 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1) 감리교신학대학 이원규교수가 실시한 「도시교회 교인들의 종교의식」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교회의 사회적역할의 부족이 54.3%로 지적된 바 있다(기독교사상 1992. 8. : 종교신문 1992. 8. 5., 3면).

공평하고 타당한 법원리가 무엇인가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고민과 공감대의 형성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신앙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목사의 보수도 개인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과세해야 한다는 판례²⁾가 있으며, 또한 목사나 신부의 사택에 대해서는 면세하는 주와 면세하지 않는 주로 나누어지는데, 면세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주의 논거는 건물의 직접적이고 밀접한 사용이 종교적 목적이 아니라는 점에 있으며, 건물의 우연한 사용이나 소유권의 귀속 또는 교회건물과의 거리 등은 결정적 요소가 아닌 것으로 본다. 면세권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건물의 점유자가 누구인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점유에 내재하는 목적 또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결정적 요소라고 한다.³⁾ 이러한 논거는 종교관련 판례가 번약한 우리나라⁴⁾의 법운영이나 입법에 있어서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

모든 종교적 문제를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법적인 면에서는 동일한 성격으로 볼 수 있는 소득이나 수입에 대해서는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과세하거나 감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입법방향이라 할 수 있겠다.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는 법치국가에서 엄연한 법현상 또는 법원리 가운데 하나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2) Union County v James, 21 Pa 525 (71Am Jur 2d, state and local taxation, §492, 787면).

3) 71 Am Jur 2d, state and local taxation, §378, 683-4면.

4) 우리나라의 종교재산과세 관련 판례의 자세한 것은 종교법판례집(한국 종교법학회, 육법사, 1982) 174-177면 참조.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I. 최근입법의견 동향

○ 분류기준표

분 야	대한민국현행법령집해당항목
憲政	제1권1헌법, 2국회, 제2권3선거·정당
統一·外交·國防	제14권13군사(1), 제15권13군사(2), 14병무, 15국가보훈, 제47권44외무, 45조약(1), 제48권45조약(2), 제49권45조약(3)
內務·地方行政	제3권4행정일반, 제4권5국가공무원, 제10권10지방제도(1), 제11권10지방제도(2), 제12권11경찰, 제13권12민방위·소방
社會·文化·敎育	제16권16교육·학술(1), 제17권17교육·학술(2), 제18권17문화·공보, 제38권38사회복지, 제40권40노동(1), 제41권40노동(2)
產業·經濟	제20권19재정·경제일반(1), 제21권19재정·경제일반(2), 제22권20내국세(1), 제23권20내국세(2), 제24권21관세, 22담배·인삼, 제25권23통화·국책·금융, 제30권28상업·무역·공업, 제31권29공업규격·계량, 30공업소유권, 제32권31에너지이용·광업, 제33권32전기·가스
農林·水產	제26권24농업(1), 제27권24농업(2), 제28권25축산, 26산림, 제29권27수산
建設	제34권33국토개발·도시, 제35권34주택·건축·도로, 제36권35수자원·토지·건설업
科學技術·交通·遞信	제19권18과학·기술, 제42권41육운·항공·관광(1), 제43권41육운·항공·관광(2), 제44권42해운(1), 제45권42해운(2), 제46권43체신
環境·保健	제37권36공중위생·의사, 제38권37약사, 제39권39환경
法院·法務	제5권6법원, 제6권7법무, 제7권8민사법(1), 제8권8민사법

1. 최근입법의견 목록

(1992. 9. 11 ~ 1992. 11. 10)

◎ 憲政 23

- 정치관계법에 관한 개정의견
 - 대통령선거법 개정
 - 대통령선거법시행령 개정안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
 -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 헌법상독립기관의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제정에 관한 의견

◎ 統一·外交·國防 25

- 통일대비북한토지관련기본법제정에 관한 의견
- 병역법 개정안
- 전투경찰대설치법 개정안 및 의견
- 고엽제후유증환자검진등에관한법률안

◎ 内務·地方行政 27

-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안에 관한 의견(담배사업법시행규칙 관련)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 지방세법 개정의견(농지세폐지 관련)
- 장묘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개정안

◎ 社會·文化·教育 29

- 장애인복지관련법제정에 관한 의견
- 서화 및 골동품에 관한 양도소득세 완화의견(소득세법 관련)
- 학원설립운영관계법에 관한 개정의견
- 교육관계법에 관한 의견

◎ 產 業 · 經 濟 31

- 보험관련법에 관한 개정안
 생명보험표준약관 개정안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
- 소비자보호법개정안에 관한 의견
-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 개정안
- 관세법시행령 개정안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 기업전문화장려법안

◎ 建 設 34

-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 중기관리법 개정안 및 의견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

◎ 科 學 技 術 · 交 通 · 遠 信 36

-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안에 관한 의견
- 도로법 개정안
- 교통사고합의금기준에관한법제정에 관한 의견
- 전화세법폐지에 관한 의견

◎ 環 境 · 保 健 38

- 의료사고피해보상구제법제정에 관한 의견
- 정신보건법안
- 의료법개정안에 관한 의견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관한 의견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안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및 의견

◎ 法院·法務 42

- 변호사법 개정안
- 특별검사제도입에 관한 의견
- 신체구속관련법에 관한 개정의견
- 뇌사 및 장기이식에 관한 입법의견
-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의견
- 민사조정법 개정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2. 최근입법의견 요지

(1992. 9. 11 ~ 1992. 11. 10)

○ 憲政

○ 정치관계법에 관한 개정의견

대통령선거법 개정

- ① 선거운동기간을 30일에서 28일로 단축하고, ② 후보자기탁금을 정당후보와 무소속후보에 구별없이 3억원으로 일원화하며, ③ TV와 라디오광고의 경우에는 각 5회씩 1분이내에서 후보부담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④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허용하되, 선거기간중 결과공표는 금지되며, ⑤ 선거소송처리기간은 「현행 1년이내에서 180일이내」로 단축하고, ⑥ 선거법공소시효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며, ⑦ 통·리·반장이 선거운동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임기만료 100일전에 해임해야 할 뿐만 아니라 6개월이내에는 복직을 금하는 내용으로『대통령선거법』을 개정함(국회통과, 1992년 11월4일).

대통령선거법시행령 개정안

- ① 구·시·면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후에 선거권이 없는 자나 사망자 등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② 후보자가 학교·공원 등 공공시설을 연설회 장소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신청하도록 하며, ③ 현수막은 교통에 장애를 주지 않는 곳에 내걸도록 하고, ④ 계시장소의 사용순서는 신고순서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대통령선거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함(국무회의).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

- 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유권자 1인당 600 원(현행 300원)으로 하고, ② 후원회를 통한 금품모금시, 비회원은 익명기부로 1회에 100만원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정치자금에관한법률』을 개정함(국회통과, 1992년 11월4일).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 ① 선거법의 위반행위를 발견했을 때에는 중지·경고·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을 국무위원급으로 상향조정하며, ③ 독자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원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회법』을 개정함(국회통과, 1992년 11월4일).
: 조선 92.10.28., 22면; 서울 92.10.29., 2면; 서울 92.10.30., 1면; 서울 92.10.30., 2면; 서울 92.10.31., 3면; 한겨례 92.10.31., 3면; 한국 92. 10.31., 2면; 동아 92.11.2., 3면; 중앙 92.11.4., 2면; 조선 92.11.6., 4면 ; 서울 92.11.7., 2면; 조선 92.11.7., 2면; 한겨례 92.11.7.,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38면) · 제2호(41~42면) · 제3호(45면) 참조

○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관한 의견

- ① 헌법상 독립기관의 경비는 독립하여 국가예산에 계상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편성권이 정부에 주어져 있음으로 인하여 사실상으로는 독립기관의 예산이 경제기획원에 의해 통제받고 있는 실정이며, ② 현행법상 정부가 독립기관의 예산을 감액하려면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기획원이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묻지 않고 예산을 삭감함으로 인하여 국회의 독립성이 침해받고 있으므로 독립기관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특례법이 제정되어야 함(국회의 「헌법상 독립기관 예산의 문제점 및 정비방안」).
- ① 정부가 독립기관의 예산을 삭감할 때에는 해당 기관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② 만약 해당 기관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해당 독립기관안을 예산안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③ 정부는 독립기관의 장이 제출한 예산배정요구액을 국가예산배정계획에 계상시켜야 하되, 이를 수정할 때에는 해당 기관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상 독립기관의 예산회계에 관한 특례법안』을 마련함(민주당).
- 국가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헌법상 정부의 권능에 속할 뿐만 아니라 독립기관이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갖게 될 경우에는 세입도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예산편성을 할 우려가 있고, 또한 국가 예산체계의 분리로 인하여 통일적인 예산관리 및 재정집행에 어려움이 있음(경제기획원).

: 서울 92.11.2., 3면

○ 統一·外交·國防

○ 통일대비북한토지관련기본법제정에 관한 의견

- 통일이후의 북한토지에 관한 이해당사자들의 상호관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북한토지관련 재산의 경우, ① 「국가소유재산」은 국유화조치를 취하거나 독립된 관리기구를 설치하여 유상의 사유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공장 및 광산」은 사유화조치를 하고, 「공공재산」은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북한의 행정재산으로 두되, 불필요한 재산은 사유화하도록 하며, ③ 「삼림」은 부분적으로 사유화되되, 「협동 단체소유의 토지」는 남한의 농지소유상환에 비추어 그 범위내에서 협동농장의 구성원에게 유상으로 분배하도록 하고, ④ 「북한에 토지를 두고 월남한 사람이나 토지개혁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잃은 북한 주민」의 경우에는 과거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보상하되, 예외적으로 남한의 소유상한선에 맞추어 일정한 한도내에서만 원상회복시켜 주면서 그 나머지부분은 보상으로 해결하도록 하며, ⑤ 「남한에 토지를 두고 월북한 사람」도 그 소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월남한 사람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상기준」에 관해서도 세밀한 검토를 행해야 하고, ⑥ 「북한의 기업」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전환하여 그 종업원의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며, ⑦ 국가소유토지의 사유화과정에서 예견되는 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일대비 북한토지관련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함(김상용 한양대 법대 교수, 『북한의 토지제도와 통일후의 개편방향』, 건국대 현대이념비교연구회주최 「남북통일이후 사회통합의 제과제」 학술세미나 (1992.10. 23)).

: 서울 92.11.2., 8면

○ 병역법 개정안

- ① 징병검사에서 현역소집판정을 받았으나 1년동안 소집영장을 받지 않으면 현역입영을 면제한 협행 「면제시한규정」을 2년으로 연장하고, ② 이미 방위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경우의 「방위소집시한」을 협행 1993년말에서 1994년 12월까지로 연장하면서 이 기간내 입영자의 경

우에는 방위병으로 근무시키되 이 기간을 넘기면 현역으로서 1년 6개 월간 복무하도록 하며, ③ 사법·행정·외무고시 및 5급공무원 공채 시험합격자의 「장교편입연령」을 현행 27세에서 3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병역법개정안』을 마련함(국방부).

: 한국 92.10.22., 1면; 국민 92.10.27., 18면; 동아 92.10.27., 21면;
서울 92.10.27., 1면; 조선 92.10.27., 30면; 한국 92.10.27., 1면; 한겨례 92. 10.27., 15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43면) 및 제3호(45~46면) 참조

○ 전투경찰대설치법 개정안 및 의견

- 의무경찰지원자의 감소로 인한 경찰인력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현행 의무경찰모집제도를 없애는 대신에 전투경찰의 충원방식과 마찬가지로 훈련소에 입소한 현역입영대상자 가운데서 인원을 차출하여 교통·치안 등 분야별로 일정기간 훈련을 시켜 일선 경찰로 배치하도록 하고, 그 복무기간을 현행 30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투경찰대설치법개정안』을 마련함(경찰청).
- 현행 헌법상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는 인정되나 치안보조의 의무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경찰청이 마련한 「전투경찰대설치법개정안」에서 차출제를 통하여 의무경찰의 수요를 채우려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범치국가의 원리에 어긋나는 위험한 발상임(중앙일보 사설).
- : 서울 92.9.24., 18면; 중앙 92.9.24., 3면; 한국 92.9.28., 22면

○ 고엽제후유증환자검진등에관한법률안

- ① 기존에 고엽제의 후유증으로 간주되어 온 비호치킨씨 임파선암·연조직육종암·염소성여드름·말초신경증 등의 4가지 질병이외에 각종 암·신경계질환 등도 검진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② 국방부와 각 군본부가 진단서·월남전참전기록확인서 등의 서류심사를 통하여 고엽제피해자로 「의심」되는 신청자의 명단을 국가보훈처에 통보하면 고엽제피해여부에 대한 최종판정 이전이라도 보훈병원에서 무료로 검진·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③ 국가보훈처장은 의무적으로 후유증환자에 대한 자료조사와 이와 관련한 역학조사 및 연구를 행해야 함과 아울러 국가보훈처장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고엽제환자검진등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함(국가보훈처).
- : 서울 92.9.30., 18면; 서울 92.10.23., 17면; 국민 92.10.30., 18면; 서울 92.10.30., 18면; 세계 92.10.30., 23면; 조선 92.10.30., 30면; 한

국 92. 10. 30., 22면; 한겨례 92. 11. 3., 14면; 한겨례 92. 11. 8., 10면

○ 内務·地方行政

○ 담배자판기설치금지조례안에 관한 의견(담배사업법시행규칙 관련)

- 청소년범죄를 예방한다는 이유만으로 전국적인 지방재정수입의 평균 30%를 차지하는 담배소비세의 공익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례를 제정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담배소매상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흡연자의 구매편의를 박탈한 처사임(전국담배소매인회 부천조합, 「담배사업법시행규칙완화건의서」).
 - 담배사업이 자치단체의 재정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현실적인 문제는 있으나 ① 자판기설치규제는 국제적 추세이고, ② 우리나라의 남성 및 청소년흡연율이 세계 1위이며, ③ 여성흡연율도 급증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에는 국민건강을 위하여 자판기설치규제가 타당함(부천시).
 - 담배사업법시행규칙개정의 취지는 청소년흡입이 빈번한 지역의 담배자판기설치를 제한하여 청소년의 흡연기회를 줄이자는 것이지만, 자판기설치의 전면금지는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통상마찰을 초래할 것이므로 부당함(재무부, 「청소년보호를 위한 담배자판기제한」 공문).
- : 한국 92. 9. 15., 19면; 한겨례 92. 10. 2., 15면; 한겨례 92. 10. 3., 13면;
조선 92. 10. 6., 29면; 서울 92. 10. 16., 17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48~49면) 참조

○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 ①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더불어 지방재정의 자립도 및 지방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현재 인구 50만이상의 시 등에 한해 설립이 허용되고 있는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모든 자치단체에 허용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여건에 맞는 각종사업들을 실시하도록 하고, ② 공기업의 사업범위가 의료·가스·상하수도사업에 제한되어 있던 것을 토지개발·터미널·시장·관광·공원·문화예술사업 등으로 확대하며, ③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설립은 자치단체의 자본금이 50%이상이어야 했던 현행 규정을 고치어 자본금이 50%미만이라도 가능하도록 합과 아울러 내무부장관의 인가승인권 가운데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하고, ④ 현행 지방공기업의 개념을 확대(지방직영사업·지방공사를 포함)시키며, ⑤ 관리자로서 공무원만 가능했던 직영기업의 경우에 별정직·전문직 채용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개정안』을 마련함(내무부).

: 서울 92.10.28., 18면; 세계 92.10.28., 2면

○ 지방세법 개정의견(농지세폐지 관련)

- 지방세법에 의해 시·군세로 징수되고 있는 농지세는 현 농촌현실을 고려할 때 농민의 부담만 높일 뿐 지방재정의 확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농지세의 징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오히려 세액을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인력의 낭비만 초래하고 있으므로 농지세는 폐지되거나 국세로 전환되어야 함(충청북도).
- ① 세목의 삭제 및 신설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절차상의 부담이 크고, ② 농지세를 폐지할 경우, 농민은 종합소득세(국세)의 과세대상이 되어 오히려 세액이 증가하고, ③ 국세청의 경직된 행정으로 인하여 농민의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농지세의 폐지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함(행정부).
- 과거 농지세가 경제성장과정의 중요재원으로서 지방재정상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농민들의 토지이용권이 그 동안 제한되어 농민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으므로 농지세의 폐지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성진근, 충북대 농경제학 교수).

: 한국 92.10.10., 19면

○ 장묘시설의 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 개정안

- 포화상태의 묘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① 화장료는 13세이상일 경우에 15,000원(현행 7,700원)으로 하고, ② 매장의 경우에는 일반묘지를 1평당 21,900원(현행 4,380원)으로, 공원묘지를 1평당 140,000원(현행 50,000원)으로 하며, ③ 묘지의 기준면적은 공원묘지·일반묘지 모두 1기당 2평(현행 2~6평)으로 하고, ④ 묘지는 15년 단위로 사용허가(현행은 한번 매장으로 영구히 사용)를 받도록 하며,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만 사용기간을 갱신할 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유골은 납골당에 보관되어 묘지의 재활용이 가능하며, ⑤ 개인분묘의 경우에도 시에서 관리하도록 하면서 묘지관리비는 3년마다 징수하고, 연속하여 2회 체납하면 무연분묘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의 『장묘시설의 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개정안』을 마련함(서울시).

: 서울 92.10.10., 16면; 한국 92.10.11., 21면

○ 社會·文化·教育

○ 장애인복지관련법제정에 관한 의견

-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단순한 개정만으로는 통합교육이념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을 받을 권리에 입각한 장애인교육권의 완전한 확보를 얻을 수 없으므로 「특수교육법」을 제정해야 하고, 아울러 ① 사회복지부의 설치 또는 대통령직속자문기구로서 상설의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② 3세부터 고등학교과정까지 장애인 교육의 의무화 및 장애의 종류와 직업에 따른 전문화된 직업훈련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③ 장애인의 취업보장방안 및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재활병원의 설립 등을 정부가 추진해야 함(장애인복지증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서울 92.10.14., 9면

○ 서화 및 골동품에 관한 양도소득세 완화의견(소득세법 관련)

- 지금은 미술계가 불황일 뿐만 아니라 2년전 동법을 입법할 당시와 같이 미술품에 대한 투기도 없으며, 양도소득세법의 시행으로 미술품 구매심리가 위축되어 작가들의 생업이 위협을 받고 있으므로 동법의 시행을 10년 연기하는 것이 바람직 함(「한국미술협회·한국화랑협회·한국미술평론가협회」의 청원서).
- 문화재를 부동산과 같이 투기나 세수증대의 대상으로 취급하려는 정부의 발상은 전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의 자유롭고 공개적인 유통을 저해하고, 음성적으로 문화재의 밀반출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동법은 개정되어야 함(「고미술협회」의 청원서).
- 미술품에 대한 양도세부과는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저하시키고, 미술품의 암거래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미술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므로 미술품양도세법의 시행을 중지해야 함(「한국화랑협회」의 7개 항결의문).

: 한국 92.9.19., 15면; 서울 92.10.5., 12면; 한겨례 92.10.7., 14; 국민 92.10.16., 19면; 국민 92.11.2., 7면

○ 학원설립운영관계법에 관한 개정의견

- 현행 학원설립운영관계법령이 대형 입시계학원위주로 되어 있어 영세 외국어·웅변·속셈학원의 운영자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있으므로 『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입시계 단파학원의 최소 설립규모를 현행 「380평에서 300평이하」로 낮추어야 함(소규모 영·수학원 설립대책위원회).
 - 입시계학원과 대학생을 제외하고는 과외교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제8조는 위헌임(소규모 영·수학원 설립대책위원회).
 - 현행 법령으로 인한 입시계학원의 공급부족 현상으로 학생들이 학원 수강을 위하여 장거리이동을 해야 하는 등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관계법령을 완화하여 개정할 경우에 수준낮은 입시학원들이 난립하여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음(서울시 교육청).
 - ① 중·고교생의 학원수강이 사실상 전면허용된 상태이고, 사설학원도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전문대출이상 학력소지자」로 되어 있는 현행 학원강사자격기준을 「4년제 대학에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로 강화하고, ② 입시학원의 시설기준에 대해서도 「강의실 연면적 300평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이 학원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등 위헌요소를 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계법의 개정을 추진함(교육부).
- : 중앙 92.9.18., 22면; 국민 92.10.5., 17면

○ 교육관계법에 관한 의견

- ① 전교조결성 및 교육민주화운동관련 해직교원의 원상복직과 보상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고, ② 전교조합법화와 관련하여 교원노동 기본권보장을 위한 노동법 등의 관계법령을 개정하며, ③ 교원단결권의 보장규정을 담은 국제노동기구의 제조약에 대한 조속한 비준 등을 촉구함(「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원상복직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본부」의 청원서).
- 오늘의 대학은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으로 인하여 대학의 민주화와 자율화가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이의 보장을 위해서는 ①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②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며, ③ 교원재임용제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교육관계법들을 개정해야 함(교육관계법개정을 위한 교육주체공동대책위원회)
- 지난 1990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본래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나 사립 학교법인의 독단과 전횡의 가능성을 남기고 있으므로 ① 교무회의 나

교수회를 학내의 민주적 의사결정기구로 부활시키고, 총·학장직선제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며, 교원의 법률적 신분을 보장하는 한편 학교의 학칙은 교육부 등 정부의 승인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제정·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②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학강사에게도 교원지위를 부여하는 특별법(대학강사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며, ③ 1990년 사립학교법 개정이후 해임·파면·재임용탈락 등으로 교단을 떠난 전국 15개대학의 교수 29명을 원상복직시켜야 함(「교육관계법개정을 위한 교육주체공동대책위원회」의 청원서).

：한겨례 92.10.15., 15면; 한겨례 92.10.18., 14면; 한겨례 92.10.28., 14면; 한겨례 92.10.31., 1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54~55면) 참조

○ 產業·經濟

○ 보험관련법에 관한 개정안

생명보험표준약관 개정안

- ① 현행 18세이상으로 되어 있는 사망보험의 피보험자를 15세이상으로 낮추고, ② 보험가입자가 계약체결시 과거병력 등을 숨겨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생명보험사는 책임개시일로부터 3년이내(현행 5년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③ 종래 단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 개개인의 서면동의를 요하던 것을 완전 폐지하고, ④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관련상품의 약관과 중요내용을 반드시 가입자에게 교부·통보할 의무를 생명보험사에게 부여하며, ⑤ 보험금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등(현행 수익자에게만 인정) 관련자 모두에게 지급사유를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의『생명보험표준약관개정안』을 마련함(재무부·보험감독원).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안

- ① 국내보험업법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출업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수출적하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외국보험회사에의 직접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② 보험계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최고한도액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보험업법시행령개

정안』을 마련함(재무부).

: 국민 92.10.5., 6면; 조선 92.10.29., 7면

○ 예산회계법시행령 개정안

- 공공공사의 입찰과 관련한 부조리와 부실공사를 막고 건설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① 현행 저가심의제를 폐지하는 대신에 최 저가낙찰제를 부활하고, ② 예정가격의 결정시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설계가격의 5~10%를 삭감하는 관행을 금지시키며, ③ 정부발주 대형 공사에는 전문민간감리회사의 책임감리를 의무화하고, ④ 설계사(엔지니어링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공사업참가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예산회계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함(재무부).
: 한국 92.9.18., 9면; 조선 92.9.18., 7면; 한겨례 92.9.18., 7면; 한국 92.10.1., 7면; 서울 92.10.1., 7면

○ 소비자보호법개정안에 관한 의견

- 개정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단체는 물품의 품질·성능 및 성분등에 관한 시험·조사로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조사기관의 시험결과를 거친 후 공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비자단체의 공표권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음(한기찬 변호사,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주최 「소비자보호법개정안에 관한 토론회」).
- 물품 등의 검사는 품질·성능·성분검사가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면 소비자단체가 전문연구기관 등에 당연히 검사의뢰를 할 것인 바, 사전에 국가가 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정광모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장,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주최 「소비자보호법개정안에 관한 토론회」).
- 현 상황에서 소비자단체가 성능·성분 등을 검사하기에는 인력 및 장비가 빈약하여 공표권을 전면적으로 소비자단체에게 부여하기는 시기상조이므로 가급적 소비자단체가 원하는 시험 및 검사기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폭 반영해야 함(김선옥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국장,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주최 「소비자보호법개정안에 관한 토론회」).
- 소비자단체의 공표권을 제한없이 허용하는데는 찬성하지만,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상호공정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제3의 전문연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조성숙 국

민당 대표최고의원보좌역,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주최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토론회」).

- 전문검사의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공표할 수 있다는 조항은 민간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제한하므로 삭제되어야 함(민주당).
- 양쪽의 주장이 모두 일리가 있으나 공표권규제조항 하나로 인하여 소비자보호규정을 강화한 법개정안의 처리가 유보된 것은 소비자들을 위해서는 불행한 일로서 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해야 함(전문가).
 - : 국민 92.10.6., 12면; 서울 92.10.6., 14면; 한겨레 92.11.6., 6면; 한국 92.11.7., 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0면) 참조

○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 개정안

- ① 수입즉시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수입원자재는 컨테이너에 실은 채로 세관통관이 가능하도록 하고, ② 보석류는 국제우편출장소에서 세관통과를 실시하며, ③ 수출용원자재중 수입자동승인 수산물은 수산물 제조·가공업체의 소재지 관할세관에서 바로 통관절차를 받도록 하고, ④ 원목·LNG·펠프 등에 대해서는 선하증권의 분할통관을 허용하면서 보세구역에 수입물품을 반입한 후, 면허전에 즉시 반출이 허용되는 기간을 물품반입후 15일까지로 연장하며, ⑤ 수입고철의 경우에는 고철전용장치장이나 고철용해전기로를 보유하고 있는 실수요업체의 관할세관에서 통관하도록 하는 반면 열대어·돔·녹용 등의 52개 심사강화 대상물품들은 컨테이너내장 통관대상에서 제외하여 수입세관에서 수입품을 풀어 정밀심사토록 하는 내용의 『수입통관사무처리규정개정안』을 마련함(관세청).
 - : 조선 92.9.15., 11면

○ 관세법시행령 개정안

- ① 로열티의 기준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일부 로열티에 대해서는 면세혜택을 주고, ② 덤핑판정기간을 8개월로 단축하며, ③ 예비조사단계에서 잠정덤핑판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④ 수출입신고때에는 포장명세서·수출입승인서 등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며, ⑤ 덤핑방지조치의 적용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⑥ 덤핑제소 및 조사개시결정권을 무역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관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재무부).

: 한겨례 92.10.24., 7면; 한국 92.10.24., 2면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 중소제조업의 금년도 사업실적분부터 2년간에 대하여 ① 법인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연간 과세소득 1억원이하분에 대해 40%를, 1억원초과분에 대해 20%를, ② 개인제조업체의 경우에는 연간과세소득 5천만원이하분에 대해 40%를, 5천만원초과분에 대해 20%를 각각 조세감면해 주도록 하고, 또한 납세편의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연도시의 소득세중간예납절차를 생략함과 아울러 원천징수하지 않는 금액을 「100만원에서 500만원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재무부가 마련하였으나 (1)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투자에 있어서 대기업은 경상지출비의 5%·증가지출비의 30%를, 중소기업은 경상지출비의 10%·증가지출비의 35%를 각각 감면해 주도록 하고, (2) 내년부터 절전이익에 대해 소득공제키로 했던 방침을 올해실적분부터 시행키로 시행시기를 앞당겼으며, (3) 임업용 기자재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4) 법인세과세특례대상의 공공법인 범위에 한국정보문화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수정함(경제장관회의).

: 조선 92.9.19., 7면; 한국 92.10.11., 7면; 한겨례 92.10.11., 1면; 서울 92.10.29., 7면; 국민 92.10.30., 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4면) 참조

○ 기업전문화장려법안

- 국제경쟁력 강화방안으로서 중소기업의 진흥과 대기업집단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① 전문화기업부채의 이자지불을 공금리수준에서 국제금리수준으로 변경하고, ② 전문화기업의 주식증여 및 상속세금을 경감시키며, ③ 주력기업의 기술개발비에 대하여 총매출액 5%이내의 장기금융금리로의 대출 등을 규정한『기업전문화장려법안』을 마련함(민자·민주당 의원법률안).

: 국민 92.10.29., 7면

○ 建 設

○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 개정안

-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부지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① 도시계획시설중 시내버스종점·운동장·종합의료시설·화력발전소 등을 생산녹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② 가스공급설비를 생산녹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일반 및 준주거지역에는 설치를 금지시키며, ③ 2,500가구이하 아파트단지의 경우에는 교육장의 결정에 따라 학교 부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④ 납골당과 장례식장을 도시계획시설에 추가하여 현재 공설 또는 사설로만 구분되어 있는 공동묘지와 화장장에 포함시키며, ⑤ 폐기물처리시설·폐차장·공공직업훈련시설·자동차학원 등도 도시계획시설로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규칙개정안』을 마련함(건설부).

: 서울 92.9.19., 19면

○ 중기관리법 개정안 및 의견

- 1991년 8월에 입법예고된 「중기관리법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① 건설기계(「중기」에서 명칭변경)가 도로상에서 과속이나 과적으로 적발될 경우에 운행을 최고 6개월간 정지(시안에는 운행을 「최고 6개월간 정지, 사업자등록의 취소 및 정지」로 규정)로, ② 건설기계가 당초의 형식승인 내용대로 제작되었는지를 가리기 위한 확인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등록말소(시안에는 「형식승인 자체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의 수정된 『중기관리법개정안』을 마련함(건설부).
- 건설부의 법개정안은 여러대의 중기소유권을 실소유자로 부터 위탁받아 대여업허가를 취득하는 현행 허가제를 일부 완화하기는 했지만 불법지입제의 폐단을 해소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1~2대씩의 중기를 소유한 영세소유주의 영업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음(전국중기경영인연합).

: 서울 92.10.9., 17면; 한겨레 92.11.3., 15면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 건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고 부실시공의 방지를 위해 ① 시공감리와 책임감리로 이원화되어 있던 민간감리를 책임감리로 일원화하고, ② 감리자에 대해 감독업무를 부과하며, ③ 부실감리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가 변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④ 건설회사의 건설기술자 현황보고의 기피·현장에서의 품질시험기피의

경우에는 최고 2천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을 마련함(건설부).

: 서울 92.9.15., 6면; 서울 92.10.31., 2면; 조선 92.10.31.,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53면) 참조

○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

- 1992년 3월에 입법예고된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의 내용 가운데 ① 투기거래를 강력히 규제하기 위해 주택을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전매한 사람을 시장이나 군수가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행정편의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외하고, ② 「입주자로 당첨된 날로부터 해당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때까지」로 규정된 민영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입주가능일이후 60일까지」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주택건설촉진법개정안」을 마련함(건설부).
- : 한국 92.9.17., 6면; 국민 92.10.5., 18면; 서울 92.10.6., 7면; 경향 92.10.7., 19면; 세계 92.10.8., 7면; 한겨례 92.10.8., 7면; 한국 92.10.10., 8면; 서울 92.10.11., 7면; 국민 92.10.11., 7면; 한겨례 92.10.11., 2면; 서울 92.10.19., 10면; 서울 92.10.27., 7면; 세계 92.10.21., 6면; 국민 92.10.30., 11면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

- 수도권내의 상대적 낙후지역인 개발유보권역·개발유도권역·자연보전권역 등의 3개권역의 농민소득증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① 해당지역에 기반을 둔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공장에 한하여 간장·고추장·된장 등의 장유제조공장과 가축분뇨를 이용한 비료공장 및 도축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자연보전권역의 도자기공장의 종설을 허용하면서 도자기공장의 부지면적을 「현행 1,000㎡에서 3,000㎡까지」로 확대하며, ③ 개발유보권역과 자연보전권역에 대하여 「현재 단지별로 60,000㎡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을 150,000㎡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함(건설부).
- : 국민 92.9.23., 6면; 국민 92.11.2., 7면; 서울 92.11.3., 9면

○ 科學技術·交通·遞信

○ 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안에 관한 의견

- 개정안 제3조제3항(교통사고로 중대한 불구 또는 불치의 손상을 입었을 경우, 처벌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규정)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加害者와 피해자간에 합의가 성립될지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던 기존의 8개조항 이외의 사고에 대해서도 처벌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지만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자의적이므로 위험의 소지가 있음(대법원).
 - 개정안 제3조제3항은 「중대한 불구 또는 불치의 손상」에 대한 부위 및 정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해석상 문제가 예기되는 바, 그 내용을 정확히 법문에 규정함으로써 법적용에 명확성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대한변호사협회).
- : 국민 92. 9. 14., 18면; 한겨레 92. 9. 14., 10면; 한국 92. 9. 14., 2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9면) 참조

○ 도로법 개정안

- 1992년 7월에 입법예고된 「도로법개정안」의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① 도로효용을 저하하는 행위 및 교통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② 도로 무단점용·무허가도로공사 및 통행료징수·자동차전용도로와의 무단 연결행위 등에 대하여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며, ③ 통행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통행하는 행위·정당한 이유없이 도로부속물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을 가하는 등의 제재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정된 『도로법개정안』을 마련함(건설부).

: 국민 92. 9. 17., 17면; 국민 92. 10. 7., 19면; 한겨레 92. 10. 8., 7면

○ 교통사고합의금기준에관한법제정에 관한 의견

- 사망사고·사고야기도주·무면허운전·횡단보도사고 등 특례교통사고의 중요위반행위는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유무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정도가 달라지므로 합의를 위하여 피해자의 요구에 가해자가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인데, 일부 피해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어서 『교통사고합의금기준에관한법(가칭)』의 제정이 시급함(박현갑, 서울신문 기자).
- : 서울 92. 10. 18., 14면

○ 전화세 폐지에 관한 의견

- 전화세가 통신시설의 확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세일 경우에는 그 자체로 존립이유가 있겠지만 ① 현재의 전화세는 정수전액이 일반회계로 전입되어 전화세부담자의 회생을 초래하고 있으며, ② 정보화시대의 중요한 필수품인 전화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기에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고, ③ 한국통신의 회선을 빌려 쓰는 데이콤은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반면, 한국통신은 전화세를 징수하고 있어 세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화세는 폐지되어야 함(진용옥, 경희대 전자공학과 교수).
 - 국내시외요금이 외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현 상황에서 전화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전화세부담은 시외전화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중부담을 하는 것이므로 지역간의 불균형해소를 위해서도 전화세는 폐지되어야 함(이광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
 - 전화세가 신설된 1973년 당시에는 전화의 회귀성으로 인하여 전화가 사치성재산으로 인식되어 세금이 부과되었지만, 지금은 전화가입자의 수가 1,500만명에 이르러 가구당 1대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당연히 전화세는 폐지되어야 함(소비자단체).
 - ① 외국의 경우, 전화세 명목의 세금부과는 없지만 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명목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이용자의 경우에는 세금을 부담하는 점에서는 외국의 예와 마찬가지이고, ② 정수된 전화세의 전액이 지방잉여금으로 투입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지방재정을 위해서도 전화세의 존립이 불가피함(재무부).
- : 국민 92. 10. 22., 12면

○ 環境・保健

○ 의료사고피해보상구제법제정에 관한 의견

-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에 의료사고 분쟁의 급증현상이 예견되므로 의료사고피해를 합리적으로 보상하고, 의료인들에게 안정된 진료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본의 「배상책임보험제도」 등을 참고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관련법의 제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함(국민일보 사설).

: 국민 92. 11. 2., 3면

○ 정신보건법안

-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관찰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신보건법안은 입법 예고된 후, 「강제입원조항」에 대한 일부 법조계·종교계의 반대에 부딪쳐 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 및 강제입원규정의 악용을 막기위해 「평가입원제」와 「가퇴원제」외에 「부당입원심사제」를 도입하고, ② 보호자에 의한 「동의입원」의 악용을 막기위해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동의입원환자도 퇴원청구를 할 수 있고, ③ 정신질환경력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고용·기타의 불공정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며, ④ 환자에 대해 통신 및 면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⑤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없이는 환자에 관련된 비밀과 녹음·녹화·촬영을 할 수 없도록 함과 아울러 특수치료시술여부에 대해서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가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었으나 국무회의과정에서 다시 (1)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자의입원·동의입원·평가입원·시도지사에 의한 강제입원·응급입원 등으로 세분화하고, (2) 시·도지사에 의한 강제입원은 정신과의사 2명이상의 진단에 의하도록 하며, (3) 보사부와 각 시·도에 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부당입원여부와 퇴원청구심의를 전담하도록 하고, (4)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기충격요법 등 특수진료는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5)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인격장애·비정신병적 인격장애를 가진 자 등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보호 및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6) 정신의료시설의 설치운영자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면서 환자에게는 정상적인 생활과 유사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하며, (7) 환자의 요구 및 정신과전문의의 진단결과 퇴원이 가능함에도 보호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신의료시설장이 직권으로 퇴원시킬 수 있도록 하고, (8) 응급입원시 자해·타해의 위험이 있다는 판단을 정신과전문의 이외에 일반의사·경찰관 등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9) 자해 또는 타인에게 해를 주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없이 72시간 동안 강제로 응급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도지사에 의한 강제입원시의 1차 퇴원시한을 3개월로 하는 내용으로 재수정하여 『정신보건법안』을 마련함(국무회의).

: 동아 92.10.8., 9면; 한겨례 92.10.9., 8면; 조선 92.10.12., 22면;

서울 92.11.7., 17면; 조선 92.11.7., 22면; 한겨례 92.11.7., 14면; 한국 92. 11., 2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72~73면) 참조

○ 의료법개정안에 관한 의견

- 진정한 의료일원화를 위해서는 의사양성제도와 면허제도를 통합·일원화해야 하는데, 개정의료법은 전제조건의 해결없이 또한 철저한 시험과정없이 양한방의 의료행위만을 일정기간의 연수를 통해 허용하고 있어서 향후 문제가 예기됨(대한의학협회).
- 양한방의 상호보완은 필요하지만, 「한방전문의제도」의 도입 등 사전보완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양한방을 일원화하는 것은 시기상조임(한의사협회).
- 현행 의료체계가 의사와 한의사로 구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분야의 진료만을 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 양한방의 상호보완 및 발전을 위해서는 양한방일원화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함(보사부).

: 한국 92.9.15., 21면; 조선 92.9.21., 22면; 조선 92.9.26., 2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73면) 참조

○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의견

- 재질이 다양하고 분리수거가 어려운 플라스틱용기류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7가지 분류법을 도입하여 재질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코드화제도」를 시행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해가 어려운 복합재질의 플라스틱용기 생산을 억제하도록 함(환경처).
- 상공부는 ① 재활용효과와 환경공해방지를 위해서는 9개 재활용대상품목에 대한 「업종별재활용촉진위원회」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품목별 재활용대책을 수립하고, 현행 「예치금제도」를 개선하여 수거물량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며, 수집·가공처리업의 경영활성화 및 설비근대화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근대화자금을 지원하고, ② 폐타이어에 대한 지정수거업자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하여 수거업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면서 시·군유지를 도심집하장으로 대여하도록 하고, 자연녹지 등에는 일시적지를 허용하도록 함(상공부, 「제조업종별재활용위원회설치 및 품목별재활용대책」).
- 자원재활용과 폐기물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① 전 행정기관이 사무용지·인쇄용지·화장지 및 프라스틱 등을 구입할 때에는 재활용이 가

- 능한 제품을 우선구입하도록 하고, ② 「이면지함」을 설치하여 각종 보고서와 인쇄물의 양면사용을 유도하며, ③ 폐기물재활용운동시에 민간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군·구의 청사공터와 각급 학교운동장·강당 등을 알뜰시장이나 벼룩시장으로 제공하고, 고속도로휴게소와 철도역에 폐기물분리수거용기를 비치하도록 함(총리훈령, 「공공분야폐기물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
- 폐기물부담금제를 도입하여 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재활용관련 사업자에게 재활용촉진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이 제정됨(국회통과 1992년 11월10일).
 - : 서울 92.9.13., 2면; 조선 92.9.13., 18면; 국민 92.9.14., 7면; 서울 92.9.19., 17면; 조선 92.9.19., 22면; 한국 92.9.25., 22면; 국민 92.10.5., 17면; 서울 92.10.5., 2면; 조선 92.10.23., 1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55면) 및 제3호(70~71면) 참조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안

- 국내환경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산업을 수출전략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① 환경기술개발원을 설립하여 「환경기술브레인풀제」를 실시하고, ② 오염방지시설투자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며, ③ 환경처장관 산하에 환경과학기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④ 정부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할 시에는 기술권의 무상양도 및 기술개발시설의 무상사용을 혜용하며, ⑤ 공해방지시설의 수입사업자에게 환경기술부담금을 부과하고, ⑥ 환경관련사업에 대한 환경오염방지기금을 지원하며, ⑦ 환경마크제를 법제화하고, ⑧ 환경처산하에 환경과학기술지원단을 설치하는 내용의『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 관한법률안』을 마련함(환경처).
- : 서울 92.10.4., 14면 한겨례 92.10.4., 2면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 및 의견

- 저공해 자동차용연료를 공급키 위하여 ① 휘발유의 새로운 제조기준으로서 기존의 납과 인 이외에 방향족화합물·벤젠·산소함량 등의 항목을 추가하여 방향족화합물은 55%이하, 벤젠은 5%이하, 산소는 0.5%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② 1리터당 납함량이 0.3g인 유연휘발유를 내년부터 1리터당 납함량이 0.013g이하인 무연휘발유로 대체하며, ③ 경유의 연료기준으로서는 황함량을 현행 0.4%에서 0.2%로, 잔유탄소량을 0.2%에서 0.15%로 완화하는 내용의『자동차연료제조기준』을 마련함(환경처, 「자동차용 저공해연료공급계획」).

- 주택가의 악취공해와 관련한 민원의 증가로 ① 공중화장실 등 분뇨처리시설, ② 세탁소, ③ 쓰레기적하장, ④ 폐수처리장, ⑤ 가죽제조보관업체, ⑥ 섬유직조업체 등의 6개시설을 생활악취단속대상(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공판장·도축장·출판 및 인쇄소·축산업·고물상 등 5개 시설로 한정)에 추가하는 내용의『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함(환경처).
- : 국민 92.9.14., 18면; 서울 92.9.14., 19면; 조선 92.9.14., 23면; 한겨레 92.9.14., 10면; 한국 92.9.14., 23면; 서울 92.10.9., 17면

○ 法院·法務

○ 변호사법 개정안

- ① 사건당사자를 특정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해 주고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② 대한변호사협회내에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신설하여 변호사법위반사건·대한변호사협회 회칙위반사건·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사건 등을 심의한 뒤에 해당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변호사징계권의 일부를 이관하는 한편, 법무부는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공소가 제기된 징계사건·3회이상 징계처분의 전력이 있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건·대한변호사협회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등의 비교적 중한 사안만을 심의토록 하며, ③ 현재 무기한으로 되어 있는 변호사의 업무정지기간을 「최고 2년」을 넘지 않도록 함과 아울러 「업무정지명령의 해제」 규정을 신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직권 또는 검찰총장·대한변호사협회장·해당 변호사의 신청을 받아 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변호사법개정안』을 마련함(법무부).
- : 국민 92.11.2., 18면; 서울 92.11.2., 18면; 세계 92.11.2., 23면; 한겨레 92.11.3., 14면

○ 특별검사제도입에 관한 의견

- 정부와 여당은 「특별검사제」의 도입이 검찰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검찰의 공소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원인이 오히려 정치권의 외압에 있는 만큼 「특별검사제」의 도입은 필요함(김창국, 변호사).

- 현행과 같이 검찰이 기소독점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상황에서는 정치적 사건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곤란하므로 권력기관과 독립된 입장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야 함(백승권, 변호사).
- : 한국 92. 9. 19., 23면

○ 신체구속관련법에 관한 개정의견

- 사전구속영장없이 피의자를 임의동행의 형식으로 강제연행한 후에 긴급구속에 따른 사후영장이 아닌 일반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서울민사지방법원).
- 종래에 대부분의 피의자를 사전구속영장없이 체포한 뒤에 긴급구속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구속하는 사례가 관행처럼 이루어져 왔으나 서울민사지법의 판결을 계기로 엄격한 법 해석과 관련임법의 보완조치가 필요함(안상운, 변호사).
- 서울민사지법의 판결과 더불어 인신구속절차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으므로 수사관행의 쇄신과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절실히 (임범, 한겨례신문 기자).
- 법원이 영장심사단계에서 긴급구속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영장을 기각한 경우에는 사실상 수사를 포기할 수 밖에 없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피의자의 인권은 무한정 보호되는 반면에 범죄자의 처벌이라는 형사상의 목적이 무시되어 부당함(검찰).
- : 국민 92. 10. 15., 19면; 국민 92. 10. 16., 18면; 한겨례 92. 10. 16., 1면 · 3면; 한국 92. 10. 16., 22면 · 23면; 한겨례 92. 10. 17., 2면

○ 뇌사 및 장기이식에 관한 입법의견

- 뇌사를 인정하여 장기이식을 하는 것은 대승보살의 보시정신에 부합하나 뇌사판정의 오판가능성에 대비한 제도적 대책이 필요함(권기종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대한의학협회주최 「뇌사인정공청회(1992. 9. 28)」).
- 뇌사가 확실히 사망으로 인정된다면 의학적으로 규명되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장기이식의 편의 때문에 뇌사판정을 서두르는 것과 타인에 의한 장기기증에는 반대함(맹광호 카톨릭의대 교수, 대한의학협회주최 「뇌사인정공청회(1992. 9. 28)」).
- 도덕적 의무나 책무는 인격을 가진 인간에게 있는 것이라 생각할 때,

뇌사설은 의무론적 정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함(김영진 인하대 철학과 교수, 대한의학협회주최 「뇌사인정공청회(1992. 9. 28)」).

- 죽음은 법적 인격의 소멸로서 권리와 의무의 발생·소멸과 관련한 많은 문제를 초래하므로 뇌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환자 및 가족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부분적으로 심장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 함(차용석 한양대 법대 교수, 대한의학협회주최 「뇌사인정제도공청회(1992. 9. 28)」).
 - 뇌사인정에 따른 장기이식의 상업적 매매수단화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법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함(이덕승 YMCA시민중계실 실장, 대한의학협회주최 「뇌사인정공청회(1992. 9. 28)」).
 - 뇌사판정기준이 불분명하여 의료진의 오판가능성이 있고, 전통적 생사관과 장기매매로 인한 부작용의 문제가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뇌사를 사망으로 보는 견해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기는 시기상조이지만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의료수준의 향상과 윤리의식의 정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가족들의 동의를 얻어 장기이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이정우, 법무부장관).
- : 서울 92. 9. 29., 17면; 한겨례 92. 9. 30., 8면; 세계 92. 10. 13., 11면; 조선 92. 10. 10., 11면; 한국 92. 10. 18., 14면; 서울 92. 10. 20., 19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 및 제2호(58면) 참조

○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의견

- 안기부의 정치공작과 개입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① 안기부의 수사권과 정보조정권을 폐지하고, ② 예산회계에 대한 특례법을 폐지하여 안기부의 예산을 전면 공개하도록 하며, ③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설치하여 안기부의 활동과 예산을 심의·감독하도록 하고, ④ 모든 안기부직원의 정치활동금지를 규정하면서 위반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야 함(민주당).
- 안기부의 정치사찰에 대한 중단선언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안기부의 전면적인 기구개편과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함(변정일, 국민당대변인).
- 안기부가 정권의 「안보기구」에서 탈피하여 국민을 위하여 봉사하는 공무원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① 안전기획부의 조직·소재지·정원·예산 및 결산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기부법 제5조」 및 안전기획부의 예산은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를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

다는 「동법 제10조 제4항」, ② 안기부의 세출예산을 총액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 ③ 국회의 예산심사 및 국정조사와 감사원의 감사에서 안기부장이 국가기밀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과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또한 국회의 질문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 등은 폐지되어야 함(한겨례신문 사설).

: 한겨례 92.9.27., 1면; 한겨례 92.9.27., 2면; 동아 92.9.30., 5면; 중앙 92.9.30., 2면; 한국 92.9.30., 3면; 한겨례 92.10.14., 1면; 한겨례 92.10.28., 14면; 한겨례 92.11.3., 2면

○ 민사조정법 개정

- ① 민사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의 경우에 대하여 현행 조정제도는 분쟁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정할 수 있으나 담당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쟁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정에 넘길 수 있도록 하고, ② 당사자간의 이견으로 화해가 되지 않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가 따로 정식소송을 내도록 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신청만 하면 소송을 낸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사조정법』을 개정함(국회통과 1992년 11월10일).

: 조선 92.9.28., 23면; 한겨례 92.10.8., 12면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 부동산중개를 특정업자에게 일임하는 「전속중개계약제」를 도입하여 의뢰받은 중개업자가 정보유통망을 이용하여 거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①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고, ② 공인중개사는 5년마다 한번씩 교육을 받도록 하며, ③ 지역별로 부동산정보유통망을 구축하고, ④ 중개업소는 쌀가게나 담배가게 등 일부 생계유지형의 영업을 제외한 일체의 영리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업법개정안』을 마련함(건설부).

: 서울 92.9.23., 6면

II. 최신법령 목록

(1992. 10. 21 ~ 1992. 11. 10)

공포번호	전명	공포연월일
조약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무역협정	1992. 11. 7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과학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	1992. 11. 7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경제·무역및기술협력공동위원회설립협정	1992. 11. 7
대통령령	군인복제증개정령	1992. 10. 22
	항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증개정령	1992. 10. 22
	특허법시행령증개정령	1992. 10. 27
	실용신안법시행령증개정령	1992. 10. 27
	의장법시행령증개정령	1992. 10. 27
	상표법시행령증개정령	1992. 10. 27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증개정령	1992. 10. 27
	변리사법시행령증개정령	1992. 10. 27
	통일원파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2. 10. 30
	내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2. 10. 30
	문화부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2. 10. 30
	문화재관리국직제증개정령	1992. 10. 30
	공보처와그소속기관직제증개정령	1992. 10. 30
	제주도개발특별법시행령	1992. 11. 6
의무부령	증기관리법시행령증개정령	1992. 11. 6
	정부표창규정증개정령	1992. 11. 6
165	외교안보연구원연구부의명칭및기능에관한규칙증개정령	1992. 10. 22
624	국립학교설치령시행세칙폐지령	1992. 10. 23
1108	국립농업자재검사소검사위탁규칙개정령	1992. 10. 29
상공부령	특허법시행규칙증개정령	1992. 10. 30
	실용신안법시행규칙증개정령	1992. 10. 30
	의장법시행규칙증개정령	1992. 10. 30
	상표법시행규칙증개정령	1992. 10. 30
건설부령	변리사법시행규칙증개정령	1992. 10. 30
515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증개정령	1992. 10. 26

국내입법의견조사(성직자 과세논쟁)

제4호

1992年 11月 28日 印刷

1992年 11月 30日 發行

發行人 李世薰
發行處 韓國法制研究院
印刷處 韓國컴퓨터產業(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 : 722-2901~3, 722-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 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원가 1,200원

